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power11222@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이우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 제안이유

- 풍수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3조)
- 다. 보험료 지원 (안 제4조)
- 라. 지원한도 (안 제6조)
- 마. 보험료 신청 (안 제7조)

3. 관련법령

- 「풍수해보험법」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를 입은 군포시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분석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 따른 가
목 및 다목의 소유주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지원한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호의 주택 :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20만원 이내
3. 제5조제3호의 온실 :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
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풍수해보험료 지원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풍수해보험료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보험가입 내용	보험상품명		
	보험회사		
	가입금액		
	보 험 료	계	
		국·도비	
		기타	
본인부담금			
보 험 료 지원신청액	원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풍수해보험료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보험가입증서(증빙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군포시장 귀하			